

JP모간아세안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 궁전신고시(구/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JP 모간 아세안 증권자투자신탁(주식)	JP 모간 아세안 증권자투자신탁(주식- <u>재간접형</u>)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5. <u>이 집합투자기구 또는 모투자신탁은</u> 파생상품에 투자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 초변수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예상과 다른 부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 다.	5. 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에 투자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집합투 자업자의 예상과 다른 부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u>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u> 대부분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화자산에 투자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대부분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화자산에 투자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설>	11. 투자자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은 해당 투자자의 과세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나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혯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등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됩니다. 따라서,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이익이 없거나 투자손실이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인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혯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등이 발생하는 경우(환헷지 대상 해외자산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헤지 거래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경우를 포함)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u>이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u> 해외의 자산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기재가 곤란하여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에 신중을기하시기 바랍니다.	13. 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의 자산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기재가 곤란하여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2007.10.1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트	
자기구의 연혁	최초설정	최초설정
	<이하 생략>	<이하 생략>
	<u><신설></u>	2017.[date]: 펀드 종류 변경(재간접형)에 따른 투자
		제한, 투자전략 및 투자신탁 명칭 변경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	<u>해당사항 없습니다.</u>
위탁사항	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 운용지시입	
	무(주식등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합니다), 조사분석업	•
	무 및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다	
	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업무를 해외위탁집합투자업	
	자인 JPMorgan Asse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위탁에	
	<u>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u>	
	주) 집합투자업자 및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u>-</u>
	제 4 부의 내용 중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및 "2.운용관련 업무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5. 나. 모투	성명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삭제>
자신탁의 외화자산		
을 운용하는 운용	-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전문인력	in Singapore	
	- AllianzDresdner Asset	
	Pauline Ng Management	
	- 2005 년 JPMorgan Asse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입사	
	주)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전략 수립 및 투	
	자의사결정 등 주도적·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해외위	
	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제 2 부. 5. 다. 운용	변경일 변경사항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내용이 없습니다.
전문인력의 최근 3	2009.04.01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년간 변경내용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Joshua Tay Pauline Ng	<u> </u>
제 2 부. 7. 집합투	이 투자신탁은 <u>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u>	이 투자신탁은 <u>집합투자증권</u> 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
자기구의 투자목적	South East Asian Nations)회원국에 설립 또는 상장되	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u>었거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관련 수혜기업</u>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
	<u>의 주식</u> 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다.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u>.</u>	
제 2 부. 8. 가. 투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JP 모간 아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인 JP 모간 아세
대상	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디	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 <u>재간접형</u>)의 신탁계약에 따
	상 및 투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른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설명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설명

조항		변			변 7	ASSEL Management 경 후
	①국내주 식	10% 이하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막상장법인이 발행한 것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의한 증권예탁증권 중국내에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하여	①주식형 집 합투자증권	50%이상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중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하는 것("주식형 집합투자증권")
	②해외주 식 ③파생결 합증권	60% 이상	발행된 것("국내주식") 아세안 및 아세안 주변국가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나아세안의 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증서로서 위 "국내주식"과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해외주식")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증권")	②기타 집합 투자증권	50%이하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중주식을 제외한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기타 집합투자증권")
	④국내채 권 ⑤해외채 권	40% 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 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국내채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또는 증서로서 위 "국내채권"과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해외채권")	③국내주식 ④해외주식	50%이하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탁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탁시장에 기업공 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 주에 한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증권예탁증권 중 국내에서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하여발행된 것("국내주식")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국내주식"과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해외주식")

조항		변	경 전		변 경	ASSEL Management 경 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	⑤파생결합 증권	50% 이하	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파생결 합증권")
	⑥자산유동 화증권	40% 이하	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 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 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외국 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 ("자산유동화증권")	⑥국내채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 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 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 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 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⑦어음 등⑧해외어 음	40% 이하	양도성 예금증서, 금융기관 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4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 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 이 A3- 이상인 것("어음 등")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어음 등" 과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 ("해외어음")	⑦해외채권	50%이하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 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 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 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 다)("국내채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위 "국내채 권"과 유사한 성질을 구비
	⑨장내파 생상품 ⑩장외파 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 른 위험평 가액이 모투자신 탁 자산총 액의 10% 이하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파생상품")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도는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장외파생상품") 국내외 금리스왑거래. 단,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	® 자산유동화 증권	50%이하	한 것("해외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당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성질을 구비한 것("자산유동화증권")
	⑪금리스 왑거래 ⑫수익증	어음(해외 채권 및 해외어음 포함) 총액 의 100% 이하	거가 되는 채권 또는 어음 (해외채권 및 해외어음 포함) 의 총액이 모투자신탁이 보 유하는 채권 또는 어음(해외 채권 및 해외어음 포함) 총 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	⑨어음 등 ⑩해외어음	50%이하	양도성 예금증서, 금융기관 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 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 등급이 A3- 이상인 것("어 음 등")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조항		변	경 전		변 ⁻	ASSEL Management 경 후
	권		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 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또는 증서로서 위 "어음 등"과 유사한 성질을 구비 한 것("해외어음")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5%이 하(자산총액의 95% 이상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운용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0% 이하). 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0%이하(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기가의 집합투자	①장내파생 상품②장외파생 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 른 위험평 가액이 모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10%이 하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 약상의 권리("파생상품")로 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 되는 것 또는 법 제5조 제 2항에 의한 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장 내파생상품")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 상품이 아닌 것("장외파생 상품")
	(3) 증권 대 (여	증권총액 의 40%	합니다)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40% 이하	⑬증권 대여	증권총액 의 50% 이하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 권총액의 50% 이하
	④환매조건부채권	이하 증권총액 의 40%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40% 이하	⑭환매조건 부채권 매도	증권총액 의 50% 이하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 권총액의 50% 이하
	매도 ⑤증권의 차입	이하 자산총액 의 20% 이하	상기 ①부터 ⑤까지 및 ⑦부 터 ⑧까지에 따른 증권의 차 입은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⑤증권의 차 입	모투자신 탁 자산총 액의 20% 이하	상기 ①부터 ⑦까지 및 ⑨ 부터 ⑩까지에 따른 증권 의 차입은 모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20% 이하
	⑥ 신탁업자 고유재		20% 이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⑯신탁업자 고유재산과 의 거래	-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
	산과의 거 래 ① 단기대 출, 금융기 관 예치	자산총액 의 40% 이하	규정에 의한 거래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 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	①단기대출,금융기관 예치	모투자신 탁 자산총 액의 50% 이하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 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 다)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 치(만기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③금전의차입	차입당시 모투자신 탁 자산총 액의 10%	이내인 상품에 한함)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일 시적인 금전의 차입	③금전의 차 입	차입당시 모투자신 탁자산총 액의 10% 이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금전의 차입
		⑩까지 및	성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 ⑤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기 ①부터 @	♪까지 및 ◐	실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 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으로 변경등록이 완료된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동, 모투자신탁의 제2항 각호에서 게 상기 ①부터 하게 된 경우에는 자제한에 적합한 로 매각이 불가는 한 시기까지 이 봅니다.	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 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 ⑤까지 및 ①의 투자제한을 위반 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 건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 등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 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투자신탁 자산총 며, ④의 투자한. 모투자신탁재산(동, 모투자신탁의 제2항 각호에서 게 상기 ①부터 하게 된 경우에는 자제한에 적합한로 매각이 불가한 시기까지 이름됩니다.	까지는 상기 ①의 투자한도는 모 한액의 40% 이상으로 변경적용되 도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 이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 ⑤까지 및 ②의 투자제한을 위반 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 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 등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 를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제 2 부. 8. 나. 투자 제한	모투자신탁(주식)의 항을 신탁업자에 및 규정에서 예외	교투자신탁인 JP 모간 아세안 증권의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투자신탁(주식- <u>재</u> -음 음 사항을 신탁업 법령 및 규정에서	고투자신탁인 JP모간 아세안 증권모 <u>간접형</u>)의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 자에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아니합니다.		러하지 아니합니다	4.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①단기대출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 즉,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에 대한 단기대출은 일체 허용되지 아니함)에게 단기대출로 모용하는 행위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함. 이하 본 투자제한부분에서 같음)에 투자하는 행위. 이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①집합투자증권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함. 이하 ①부터 ⑥까지에서 같음)가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 이하 ①부터 ⑥까지에서 같음)의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호각목의 어느 하나 또는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수 있음.	
	②동일종목투자	정우 동필립한 등에 필정한 당한 지분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 이하 본 투자제한 부분에서 같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②집합투자증권	모두자신틱 자신동액의 20%을 소파 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 행령 제80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에는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까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모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0%까지 각 투자할 수 있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ㅇ자산총액의 100%이하: 국채증권,		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집합투	
	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	
	채권	③집합투자증권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ㅇ자산총액의 30%이하: 지방채증권,		위	
	특수채증권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	O 지원 등 지조 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④집합투자증권	투자하는 행위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재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		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⑤집합투자증권	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	
	인수한 어음에 한함), 파생결합증권,		자하는 행위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가 받는 판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		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모투자신탁	
	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		의 투자재산으로 투자하는 다른 집	
	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⑥집합투자증권	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		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		및 판매보수 합계가 법 시행령 제	
	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77조 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	
	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당됨)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		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	
	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⑦단기대출	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		외. 즉,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	
	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		열회사에 대한 단기대출은 일체 허	
	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		용되지 아니함)에게 단기대출로 운	
	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용하는 행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	
	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		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	
	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ㅇ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투자대상자 산을 포함. 이하 본 투자제한 부분	
	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		선물 포함. 이야 본 부자제한 부문 에서 같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	
	다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		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	⑧동일종목투자	자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	
	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	७० <i>=</i> ०नॅ७०	지문증권(그 답한 등이 결정한 지문	
	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		항. 이하 본 투자제한 부분에서 같	
	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		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	
	을 말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각 동일종목으로 간주. 다만, 다음의	
	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1월간 적용	ㅇ자산총액의 100% 이하: 국채증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
	③동일법인등이	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	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발행한 증권	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한 채권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ㅇ자산총액의 30% 이하: 지방채증
	∞ = 0. H 0. = 0.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 법률에 따
	④동일법인등이 바레히 주기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	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발행한 증권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이 정한 적	및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⑤파생상품매매	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또는 인수한 어음에 한함), 파생결합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	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
		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⑥파생상품매매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는 행위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	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
	⑦파생상품매매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을 포함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
		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만 해당됨)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⑧파생상품매매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
		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당 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	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와 모투자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
		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⑨집합투자업자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만, 계	ㅇ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③합합구시합시 계열회사 발행	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
	게르되시 글 8 지분증권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집합투자업자	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
	AEOE	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	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
		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	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
		권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	을 말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중까지 투자가능.	에서 당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
	 ⑩후순위 채권	모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	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매월
		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조항	변 경 전		### #################################
	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월간 적용합니다.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⑨동일법인등이	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
	모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②	발행한 증권	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를
	및 ⑥부터 ⑧까지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모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모	@ E O H O E O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	(1) ⑩동일법인등이 (1) 발행한 증권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
	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②부터 ④	철생인 5편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까지 및 ⑥부터 ⑧까지의 투자제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이 정한 적
	에는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제한에 적합한	⑪파생상품매매	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		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제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
	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⑫파생상품매매	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9-1000 11 11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
			는 행위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
			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
			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③파생상품매매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을 포함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
			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④파생상품매매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이 모두자신력 자신동액의 10%을 조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조피아어 구시아는 행위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
			합합수시합시기 단증에는 단체 합합 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와 모투자
			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만, 계
		│ ⑤집합투자업자 │	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계열회사 발행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집합투자업자
		지분증권 	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
			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
			권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
			중까지 투자가능.
		 ⑮후순위 채권	모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
		쌍구正기 세년 	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

구칭	нэп		ASSEL Managemen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모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상기 ①,	
		②, ⑧, ⑫부터	⑭까지의 투자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합니	
		다.		
		모투자신탁재	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모	
		투자신탁의 일	J부해지 등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각호	
		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①부터 ⑥	
		까지, ⑧부터	⑩까지, ⑫부터 ⑭까지의 투자제한을 위반	
		하게 된 경우	에는 그 위반일로부터 3개월까지 그 투자	
		제한에 적합한	·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	
		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	제한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제 2 부. 9. (2) 모투	JP 모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투자신탁재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룩셈부르그	
자신탁의 투자전략	산의 60% 이상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 설	에 등록된 제	이피모간펀드(JPMorgan Funds)에 속한	
	립 또는 상장되었거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하위 집합투지	ㅏ기구인 JPMF-아세안 주식형 펀드	
	의 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에	(JPMF-ASEAN E	quity Fund)("본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투자하여 장기	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모투자	
		신탁이 투자하	ト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아세안	
	그러나 이 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주식형 펀드(J	PMF-ASEAN Equity Fund)는 주로 주로 동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남아시아국가	연합(아세안) 회원국들의 회사들에 투	
		자를 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달성하고자		
	외화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	합니다.		
	리아(주)의 계열회사인 JPMorgan Asse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에게 위탁됩니다.		투자하는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주식형 펀드(JPMF-ASEAN Equity Fund)의	
		개요는 아래오	· 같습니다.	
			1	
		펀드명	JPMF-아세안 주식형 펀드(JPMF-ASEAN	
			Equity Fund)	
		기준통화	미달러화(USD)	
		벤치마크	MSCI AC ASEAN Index (TRN)	
		투자목적	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주)} 회원	
			국들의 회사들에 투자를 함으로써 장기	
			적인 자본 증식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은 투자설명서	
			일자 현재 아세안 소속 국가들은 브루 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	
			아 및 베트남입니다. 아세안의 구성원 국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이 항목에 기재된 사항은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기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조항	변경전	변경후 재사항은 본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 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자산(현금 및 현금 등가물은 제외)의 67% 이상을 자산(현금 및 현금 등가물 제외)의 최소 67% 이상을 아세안 회원국 지역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회사(소규모 자본 회사 포함)들의 지분증권에 투자합니다. 아세안 회원국 중 일부는 신흥시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나라(특히 중국)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아세안 회원국에 상장된 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채무증권, 현금 및 현금등가물도 부수적으로 보유될 수 있습니다. 이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UCITS 및 다른 UCI들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모든 통화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통화위험은 헷지됩니다.
		위험특성 투자자산의 가치는 등락할 수 있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공격적으로 운용되고, 큰 규모의 자산에 투자함으로 써 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단기간에 큰 규모로 투자대상자산을 교체함으로써 시장의 특정 영역에 상당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분 증권의 가치는 개별 회사의 성과 및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할 수 있습니다. · 지분증권의 가치는 각 회사의 실적과 전반적인 시장상황에 따라 등락할 수 있습니다.

조항	변 경 전		ASSEL Management 변 경 후
			·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신
			흥시장은 정치적, 규제적, 경제적 불안정
			성의 증대, 발달되지 못한 보관 및 결제
			절차, 낮은 투명성 그리고 높은 재무적
			위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흥
			시장의 통화는 불안정한 가격변동이 있
			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증권은 선
			진시장의 증권보다 변동성이 높고 유동
			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산업분
			야 또는 국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
			된 펀드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유동성이 낮
			고 변동성이 높은 소규모 회사의 주식
			에 투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규모회
			사의 주식보다 더 큰 재무적 위험을 수
			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환율 변동은 투자자의 투자수익에 악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벤치마크는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성
		정보	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벤치마크와 유
			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펀드등록일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법에 따라
			2013년 1월 15일에 등록되었습니다.
		펀드매니저	Pauline Ng Pauline Ng는 Pacific Regional Group 소
			속으로 투자매니저이자 아세안 국가 전
			문가입니다.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2005년 당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그 이
			전에는 AllianzDresdner Asset
			Management 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처음에는 Asia ex Japan
			telecommunications의 애널리스트로서
			그 후에는 말레이시아와 이머징 아시아
			의 책임운용역으로 일하였습니다. 싱가
			포르에 있는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에서 회계학 학사학위를 받았
			습니다. 공인회계사 및 CFA자격증을 보
			유하고 있습니다.
		운용회사	JPMorgan Asset Management (Singapor
			e) Limited

		Asset Managemen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다만,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JPMF-아세안 주식형 펀드(JPMF-ASEAN Equity Fund)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집합투자업자·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수익자에게의 통보 등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일반적으로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환율변동에 따라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참조통화 ^{주 1)} 로 나타낸 자산가치의최대 100%까지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원화)로 한렛지하고자 합니다.	모투자신탁은 일반적으로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는 하나 이상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 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의 최대 100%까지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원화)로 환혯지하고자 합니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전적인 재량 하에 외화자 산의 통화를 참조통화로 헷지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율 위험에 대한 헷지는 참조통화로 나타낸 자산 가치 및/또는 외화자산의 통화 노출의 100%까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환헷지 전략이 수행된 시기에 따라 환율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헷지가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환율 위험에 대한 헷지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의 100%까지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환혯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손실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환혯지 전략이수행된 시기에 따라 환율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이익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혯지가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u><이하 생략></u>	<이하 생략>
	비교지수: MSCI AC <u>South East Asia</u> TRN Index(USD) ^{주4)} 95% + 콜금리 5% 주1) 참조통화란 모투자신탁이 채택한 통화를 말하	비교지수: MSCI AC <u>ASEAN</u> TRN Index(USD) ^{주 3)} 95% + 콜 금리 5%
	다) 검조동와된 모두자신력이 제력한 동와를 될어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외화자산의 가치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이 경우에 참조통화는 미달러화로 표시됩니다.	
	<u><이하 생략></u>	<이하 생략>

		ASSEL Managemen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주 4) 이 투자신탁은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u>투자대상국가와 한국간의 영업일, 시차등으로 인하여 비교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u>	주 3) 이 투자신탁은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국가와 한국간의 영업일, 시차 등으로 인하여 비교시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직접 주식에 투자하지 않고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므로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평가액 산출기간에 따라서 추가적인 괴리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9. 나. 수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구조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종류(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하게 되면, 자투자신탁을 통하여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손익은 이 투자신탁을 통하여 종류(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 구 등에 투자되며,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 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서 발생한 손익은 이 투자신탁을 통하여 종류(클래스) 수익증 권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제 2 부. 10.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u>모투자신탁</u> 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하여 본 문서의 작성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u>하위 집합투자기구</u> 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하여 본 문서의 작성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위험은 <u>모투자신탁</u> 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기타 투자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u>하위</u> 집합투자기구 및 이 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기타 투자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추가>	또한,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대하여 제2부 "9. 가.(2)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중 위험특성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헷지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참조통화로 나타낸	헷지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가치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표시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를 이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로 환혯지 하고자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하며,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는 전적인		기준통화로 환혯지 하고자 합니다.
		재량 하에 외화자산을 참조통화로 환헷지		환혯지가 정확한 헷지를 제공하지 않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헷지가
		환헷지가 정확한 헷지를 제공하지 않을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혯지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i) 이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i)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하위
		기준통화와 참조통화 간의 및/또는 (ii)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 간의 및/또는
		참조통화와 모투자신탁의 외화자산의 표시통화 간의 및/또는 (iii) 모투자신탁		(ii)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와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의 통화간의 환율
		외화자산의 통화와 외화자산으로부터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창출되는 이익의 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2부"9.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가.(3)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2부 "9. 가.(3) 이		위험관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헷지 전략이 수행되는 경우 이		환헷지 전략이 수행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i)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 대비 하위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의 가치상승으로
		참조통화의 가치상승 및/또는 (ii)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참조통화에 대한 외화자산의 통화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환율변동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은 다양한	환율변동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양한
	위험	통화로 구성된 자산에 투자하거나 다양한	위험	통화로 구성된 자산에 투자하거나 다양한
		통화로 투자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		통화로 투자수익이 창출되는 하위
		투자자산은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실적은 (i)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실적은 (i) 모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참조통화 간의		기준통화와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및/또는 (ii) 참조통화와 외화자산의 통화		표시통화 간의 및/또는 (ii) 하위
		간의 및/또는 (iii) 모투자신탁 외화자산의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와 하위
		통화와 외화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의 통화간의 환율
		이익의 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영향을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 및		또한, 이 투자신탁의 실적은 외환 감독
		모투자신탁의 실적은 외환 감독 규정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 위험과 관련한 보다
		전화에 따다 영향을 닫을 구 있습니다. 통화 위험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 있습니다. 중와 위임과 전인만 모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2부 "9. 가.(3)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환헷지를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환헷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과 관련한 위험에 또한		사용되는 상품과 관련한 위험에 또한
		노출됩니다.		노출됩니다.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u></u>	통화위험 하위 집합투자	인 성 선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 및 투자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혯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지만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화위험 하위 집합투자	모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자산 및 투자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은 이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혯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지만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는 경제, 정치, 시장 및 발행인의 상황
	기구 위험		기구 위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산업, 금융시장 및 증권은 이러한 변화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모투자신탁의 가치는 변동성을 가질 수 있고, 단기간 동안에는 변동성이 더심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세금 및 규정등 제도적 위험	모투자신탁이 운용되는 기간 중 법률, 세금 및 규정 등의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운용중인 투자신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규정이 제정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및 수익자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세금 및 규정등 제도적 위험	하위 집합투자기구 및/또는 이 투자신탁 의 모투자신탁이 운용되는 기간 중 법률, 세금 및 규정 등의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 운용중인 하위 집합투자기구 및/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규정이 제정되는 경우 하위 집합투자기구, 이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및 수익자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 이하 같음)은 해당투자자의 과세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나,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혯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등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포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이익이 없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인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환헷지 대상
				해외자산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헤지
				거래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14.
				나. (6)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수익자에
				대한 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위	<신설>	하위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		집합투자	및/또는 모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유동성
	기구와의		기구와의	관리 목적을 위해 유동성 자산에
	성과차이		성과차이	투자되므로 이 투자신탁의 성과는 이
	위험		위험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UCITS 및	<신설>	UCITS 및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UCI에 V	LE	UCI에 V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그 자산의 전부
	 대한		 대한	또는 일부를 UCITS 및 UCI(이하
	투자위험		투자위험	"피투자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경우, 본
				위험은 피투자펀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수행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피투자펀드의 투자결정은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피투자펀드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과 동일한
				증권, 동일한 자산 클래스, 산업, 통화,
				국가 또는 상품에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펀드의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고자 하는 노력이 언제나 달성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피투자펀드의 경우 일정한 수수료 및
				피우자핀드의 경우 일정만 구구표 및 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기용을 구파할 수 있으며, 이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고무자근국에 무지하는 에뀌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에 반영될
				것입니다. 다만,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유동성 위험	모투자신탁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자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은 선물, 스왑 및 비상장 옵션 등과같은 장외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품들은 때때로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즉시 현금화하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자산의 현금화가 요구되는 경우, 일부 자산은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투자자의 환매요구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투자대상국가의 휴일 등의 이유로 인하여집합투자대산의 평가에 있어 차이가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위험 및 외환거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유동성 위험 오퍼레이 션 위험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관리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기타 JPMorgan Chase & Co. 소속 회사가 운용하는 피투자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선취보수, 전환/환매 수수료, 연간 운용/자문보수 또는 운영/관리 비용은 중복적으로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하위 집합 투자기구가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 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집합투자재 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선물, 스왑 및 비상장 옵션 등과 같은 장 외거래상품을 다량 보유하는 집합투자기 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품 들은 때때로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외집합투자 업자가 이를 즉시 현금화하기 곤란할 수 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투자신탁은 재간 접형 집합투자기구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자산 전체의 현금화가 요구되는 경우, 월 단위로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같은 특정 자산은 단기간에 즉시 현금화하기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투자자 의 환매요구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 투자대상국가의 휴일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국가의 휴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더 높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 위험 및 외환거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제 2 부. 13. 나. 집	신탁업자 보	수 - <u>0.06</u> %	신탁업자 보	
합투자기구에 부과				
되는 보수 및 비용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자인 JPMor Limited 에게 업자 지급되	수는 모투자신탁의 해외위탁집합투자업 gan Asset Management(Singapore) 지급되는 운용보수(해외위탁집합투자 는 운용위탁보수는 연간 0.50%)를 포함 이 투자신탁에서 지급되지 않고 집합	위 집합투자 Asset Mana 되는 운용보	자업자보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 ·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JPMorgan agement(Singapore) Limited에게 지급 ·수(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 · 운용보수는 연간 0.50%)를 포함하고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업자가 별도로 지급합니다	있으며 이 투자신탁에서 지급되지 않고 집합투자업
		자가 별도로 지급합니다
	주 9)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로서 이	주9) 합성총보수·비용비율(Synthetic Total Expense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에서 지출한 보수와 발생되	Ratio)로서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
	는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구에서 지급되는 보수를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추정한 비율이므로 실제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	안분하여 추정한 비율이므로 실제비율은 이와 상이
	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는 이 투자신탁에 청구되
		지 않으므로, 이 투자신탁에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 10) 증권거래비용은 모투자신탁이 최근 1년 동	주10)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급되지 않
	안 지급한 증권거래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	으며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여 추정한 비율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증권거래비용은 하위 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됩니다
	있습니다.	

조항	변 경 전	Asset Management 변 경 후
_	<u>원 경 전</u> 	(1)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제 2 부. 14. 나. 투 자소득에 대한 과 세	(1)구자오득에 대한 과제 <신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등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 투자신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REITs를 포함함)를 처분함으로써 얻게 되는 배당금및 집합투자증권의 처분 이익의 범위 내에서 한국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하생략>	<이하생략>
	<신설>	(6)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수익자에 대한 과세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에 따른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합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는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을 통하여 해외상장주식(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그 시행령에서정하는 해외상장주식을 말하며, 이하 "해외상장주식"이라 함)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투자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해외상장주식을 말하며, 이하 "해외상장주식"이라 함)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은 해당 투자자의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혯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 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됩니 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이익이 없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 익인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 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 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환혯지 대상 해외자산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헤지 거래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 다.

조항	변 경 전		ASSEL Management 변 경 후
± 6	E 0 E	자시타에 트ェ	인 영 후 가한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에게 적용되
			r한 국내 거구자인 무자자에게 직용되 관련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_	
		구 분	주요 내용
		투자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3천만 원(투자자가 금융회사
		 투자한도	등에서 가입한 모든 해외주식투
			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된
			금액을 합산함)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 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
		100	식투자전용펀드)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세제혜택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을
		세세에곡	투자자의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에
			서 제외
		세제혜택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적용기간	에 가입한 날로부터 10년까지
	<신설>	(8) 금융정보	자동교환 (Automatic Exchange of
			"AEOI") / 공통보고기준 (Common
			andard, "CRS")
		71-11-11-11-11	
			기구(OECD)는 조세 사안에 관한 금융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동 기준에 따라
			다자간 AEOI 협정을 체결한 관할지들
			지에 거주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
		를 공유할 것	선입니다. AEOI/CRS에 따른 정보 보고
		AEOI/CRS 시	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원	16일을 기준으로, 호주, 영국령 버진
			이만 아일랜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함한 77개 국가가 다자간 협정을 체결
		하였습니다.	홍콩은 적절한 국가들과 양자간 AEOI
		협정을 체결하	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자개저 트지다	나들은 AEOI/CRS의 시행이 미치는 영향
			투자자 자신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조
			부터 각자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 4 부. 2. 가. 집합	<u>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u>	해당사항 없습	<u> </u>
투자재산의 운용	<u>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u>		
(지시)업무 수탁회	업무(주식등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합니다), 조사분		
사	석업무 및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		
	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업무를 해외위탁집합투		
	<u>자업자인 'JPMorgan Asset Management (Singapore)</u>		

조항		변 경 전	ASSET Management 변경후
	Limited'에 위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 위탁에 따	
		투자업자가 부담하며 업무 위탁에	
		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자업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집합투자	
		받아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습	
	니다. 집합투자 ⁹	업자는 신탁계약 변경절차에 따라 <u></u>	
	해외위탁집합투	자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해외위	
	<u>탁집합투자업자</u>	<u>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u>	
	<u>인터넷홈페이지</u>	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u>자업자의 회사개요는 아래와 같습니</u>	
	<u>다.</u>		
	해외위탁집합	JPMorgan Asset Management	
	투자업자명	(Singapore) Limited	
	설립일	1976년 8월 4일	
		17th Floor, Capital Tower, 168	
	회사주소	Robinson Road, Singapore 068912	
		전화번호: (65) 6882 2411	
		팩스: (65) 6536 3361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는 1976 사법에 근거하여 싱가포르 재정국에 의	
		시합에 는거하여 경기로드 제경국에 되 2009 년 12 월 31 일 현재 110 억 달러	
	의 자산을 운용		
제 4 부. 4. 다. 투자	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인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인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중개업자 선정기준	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u>다만, 이 투자신탁</u>	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u>삭제></u>
	이 투자하는 모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 중 외화자	
	<u>산의 매매업무는</u>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선	정한 중개회사를 통해 이루어집니	
	<u>다.</u>		
[붙임] 용어풀이	<u>15. "해외위탁집</u>	합투자업자"라 함은 JPMorgan Asset	15. "하위 집합투자기구"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모투
	Management (Sin	gapore) Limited 를 의미합니다.	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아세
			안 주식형 펀드(JPMF-ASEAN Equity Fund)를 의미합니
			<u>다.</u>

- 신탁계약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JP 모간 아세안 증권자투자신탁(주식)	JP 모간 아세안 증권자투자신탁(주식- <u>재간접형</u>)
제 2 조(용어의 정	5. "투자신탁"이라 함은 JP 모간 아세안 증권자투자	5. "투자신탁"이라 함은 JP 모간 아세안 증권자투자
의)	신탁(주식)을 말한다.	신탁(주식- <u>재간접형</u>)을 말한다.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 구의 명칭 및 종 류) 제 3 조의 2(모투자	① 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은 "JP 모간 아세안 증권자투자신탁(주식)"이라 한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29조 제1호의 규정에의한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이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다.	자투자신탁(주식- <u>재간접형</u>)"이라 한다. ②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신탁)	1. JP 모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JP 모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 <u>재간접형</u>)
제 16 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u>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u> 회원국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수혜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u>집합투자증권</u> 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 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9 조(보수)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보수율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의 0.60	의 0.40
부칙(2017.01.)	<신설>	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제 5 조제 1 항에도 불 구하고 법에 따른 등록의 완료 및/또는 증권신고서 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간이투자설명서

Laline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JP 모간 아세안 증권자투자신탁(주식)	JP 모간 아세안 증권자투자신탁(주식- <u>재간접형</u>)
I. 집합투자기구의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개요 - 집합투자	서 <u>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u>	서 <u>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투자신탁재산의 대</u>
기구 특징	Asian Nations)회원국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나 동	부분을 룩셈부르그에 등록된 제이피모간펀드
	<u>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관련 수혜기업의 주식에</u>	(JPMorgan Funds)에 속한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제
	<u>주로 투자</u> 하는 모투자신탁인 JP 모간 아세안 증권모	<u>이피모간 펀드-아세안펀드(JPMF-ASEAN Fund)에 투</u>
	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며 JP 모간 아세안 증권모	<u>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u> 하는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주식)의 외화자산의 운용은 해외위탁집합	인 JP 모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투자업자인 JPMorgan Asset Management	투자합니다.
	(Singapore) Limited 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 <u>재간접형</u>)
개요 - 분류		

조항	변 경 전	## ASSEL Management 변경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보수(연,%)	모든 클래스의 기타보수: <u>0.085</u> %	모든 클래스의 기타보수: <u>0.065</u> %	
II. 1. 집합투자기구 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u>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회원국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관련 수혜기업의 주식</u> 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장기적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u>집합투자증권</u> 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 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 다.	
II.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 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모투 자신탁인 JP 모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주식)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동 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 설립 또는 상장되었거 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의 경제와 관련된 사 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 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간 아세안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투자합니다.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룩셈부르그에 등록된 제이피모간펀드(JPMorgan Funds)에 속한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아세안 펀드(JPMF-ASEAN Fund)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외화자산에 대한 운용업무는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 리아(주)의 계열회사인 JPMorgan Asset		
	Management (Singapore) Limited 에게 위탁됩니다.	래와 같습니다. 펀드명 JPMF-아세안주식 펀드(JPMF-ASEAN Equity Fund) 기준통화 미달러화(USD) 벤치마크 MSCI AC ASEAN Index (TRN) 투자목적 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주)} 회원국들의 회사들에 투자를 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증식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은 투자설명서일자 현재 아세안 소속 국가들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및 베트남입니다. 아세안의 구성원국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전략 주) 이 항목에 기재된 사항은 본하위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기재사항은 본 투자신탁에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직접 적용되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는 내용은 아닙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자산(현금 및 현금 등가물 제외)의 최소 67% 이상을 아세안 회원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아세안 회원국 지역에 서 주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지분증권에 투자합니다 아세안 회원국 중 일부는 신흥시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집합투자기구는 다른 나라(특히 중국)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아세안 회원국에 상장된 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UCITS 및 다른 UCI들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명지 목적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을 위하여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형지 목적 및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을 위하여 금융파생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공근 통합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단기간에 큰 규모로 투자대상자산을 교체함으로써 비동성이 클 수 있으며, 단기간에 큰 규모로 투자대상자산을 교체함으로써 시장의 특정 영역에 상당히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분 증권의 가치는 개별 회사의성과 및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할 수 있습니다 지분 증권의 가치는 개별 회사의성과 및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할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은 정치적, 규제적,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대, 발달되지 못한보관 및 결제절차, 낮은 투명성 그리고 높은 재무적 위험의 영향을받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증권은 선진시장의 증권보다 변동성이 높고 유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산업 분야 또는 국가에 집중적으로

	Asset Management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된 펀드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본 하위집합투자기구는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높은 소규모 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규모회사의 주식보다 더 큰 재무적 위험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은 투자자들의 수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통화 행징은 항상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II. 3. 수익구조	모자형투자신	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모자형투자신	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서 발생한 손익은 종류(클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레스) 수익증 [:]	권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실적에서 발성	생한 손익은 종류(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	자에게 귀속됩니다.
II. 6.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지분		모투자신탁 또는 모투자신탁이 투
		증권, 채무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집합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 변동, 이		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
	시장위험	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시장위험	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
	및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모투자신탁	및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
	투자신탁	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	투자신탁	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
	위험	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	위험	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
		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
		수 있습니다.		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
		집합투자업자는 참조통화로 나타낸		다. 집합투자업자는 하위 집합투자기구
		자산가치를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		의 표시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를
		로 환혯지 하고자 하며, 해외위탁집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로 환헷지
		합투자업자는 전적인 재량 하에 외		하고자 합니다. 환헷지가 정확한 헷
		화자산을 참조통화로 환헷지 할 지		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또한, 이러한 환헷지가 성공할 것이
		환헷지가 정확한 혯지를 제공하지		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투자
	에 행지위험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	헷지위험	신탁의 투자자는 (i) 이 투자신탁의
	기 첫시키 ii	헷지가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기준통화와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없습니다.		표시통화 간의 및/또는 (ii) 하위 집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i) 이 투		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와 하위 집
		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합투자기구의 자산의 통화간의 환
		기준통화와 참조통화 간의 및/또는		율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
		(ii) 참조통화와 모투자신탁의 외화		다. 환헷지 전략이 수행되는 경우
		자산의 표시통화 간의 및/또는 (iii)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 대비 하위
	 	모투자신탁 외화자산의 통화와 외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화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8 수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이 수행되는 투자신탁은 (i) 이 투자신 하는 모투자신탁의 기준 한 참조통화의 가치상승 (ii) 참조통화에 대한 외화 화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을 수 없게 됩니다.	경우 이 !탁이 투자 통화에 대 및/또는 라자산의 통 이익을 얻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의 가치상 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산한 통화로 구성된 자산에나 다양한 통화로 투자수되기 때문에, 그 투자자산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산은 (i) 이 투자신탁이 투기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간의 및/또는 (ii) 참조통자산의 통화간의 및/또는 이 보기 환율 변동에 영향들었습니다. 이 투자신탁 등학의 실적은 외환 감독학에 따라 영향을 받을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위하여 사용되는 상품과험에 또한 노출됩니다.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	에 투자하거 는익이 창출 산은 환율 있습니다. 신탁의 실적 자하는 통외 모두 하는 모와 함을 투자인의 등을 모두 있습니 구수 환혯지를 위관련한 위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양한 통화로 구성된 자산에 투자하거나 다양한 통화로 투자수익이 창출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 간의 및/또는 (ii)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와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와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의 통화간의 환율 변동에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투자신탁의 실적은 외환 감독 규정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투자신탁의 부자자는 환 헷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과 관련한 위험에 또한 노출됩니다.
	하는 자산 및 투자자산으 출되는 이익은 이 투자산 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은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칠 수 있습니다. 환헷지 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언제 는 것은 아닙니다.	L탁 및 모 다른 통화 환율 변동 영향을 미 전략은 환 을 최소화	통화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 하는 자산 및 투자자산으로부터 창 출되는 이익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될 수 있 습니다. 환율 변동은 투자수익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혯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지만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투자신탁은 일반적으로 외화표시자산	에 투자하기	모투자신탁은	일반적으로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는
II O OI ETLAIFI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	·치가 변동할	하나 이상의 경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II. 8.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참조통화((미달러화)로	<u>환율변동에 띠</u>	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
및 모두자신릭의 위험관리	나타낸 자산가치의 최대 100%까지 모	<u>투자신탁의</u>	습니다. 집합투	자업자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
11 8 간 년 	기준통화(원화)로 환헷지하고자 하며 하	<u> 외위탁집합</u>	통화로 나타낸	! 자산가치의 최대 100%까지 모투자
	투자업자는 전적인 재량 하에 외화자산	<u>의 통화를</u>	신탁의 기준통	화(원화)로 환헷지 ^{주1)} 하고자 합니다.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u> </u>	 환율 위험에 대한 헷지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
	가치 및/또는 외화자산의 통화 노출의 100%까지	시통화로 나타낸 자산가치의 100%까지 하지 않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은 환율 변동	수도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u>의사 명을 무고 쓰립되다.</u> 된것시 단국는 단을 단증 으로 인한 손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환혯	<u> </u>
	지 전략이 수행된 시기에 따라 환율변동으로 발생	수행된 시기에 따라 환율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 선택이 구행된 시기에 떠나 된뮬린등으로 필명 할 수 있는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	│
	서 환혯지가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산출하 기 어렵습니다.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는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하체지는 이반적으로 자이 통하셔드기게 미 이하스
	환혯지는 일반적으로 장외 통화선도거래 및 외환스	환혯지는 일반적으로 장외 통화선도거래 및 외환스
	왕계약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합니	옵계약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수행하고자 합니
	다. 관련 기초 통화가 유동성이 없거나 또는 다른	다. 관련 기초 통화가 유동성이 없거나 또는 다른
	통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헷징	통화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헷징
	기법(잘 거래되지 않는 통화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기법(잘 거래되지 않는 통화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다른 화폐를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다른 화폐를
	헷징하는 것)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헷징하는 것)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환혯지가 외화자산의 통화 및/또는 참조통화에 대	환헷지가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에 대하여
	하여 수행되는 경우 이러한 환혯지 거래로부터 발	수행되는 경우 이러한 환혯지 거래로부터 발생된
	생된 모든 비용, 그 결과로 생긴 수익 또는 손실은	모든 비용, 그 결과로 생긴 수익 또는 손실은 각각
	각각 모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에 귀속됩니다.	이 투자신탁에 귀속됩니다.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환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환헷징을 하는 경우 수수료	헷징을 하는 경우 수수료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
	등 비용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나 비용만을 별도	지 않거나 비용만을 별도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
	분리하여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환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환헷지에 따른 비용을 별
	헷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u><신설></u>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에 따른
		<u>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합니다. 해외</u>
		<u>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는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u>
		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을 통하여 해외상장주
		식(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해외상장주식을 말하며, 이하 "해외상장주
│ Ⅲ. 1. 다. 해외주식		식"이라 함)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투자
투자전용집합투자		<u>합니다</u>
증권저축을 통하여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이 투자신탁에 투		17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외주식투자전용집
자한 수익자에 대		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 ' - ' ' ' ' ' ' ' ' ' ' ' ' ' ' ' ' '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투자전
"		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로부터 10년이 되
		는 날까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그 시행령에서 정
		하는 해외상장주식을 말하며, 이하 "해외상장주식"
		이라 함)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
		(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은 해당 투자자의 과

조항	변 경 전	변 경 후
		세대상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혯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
		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됩니
		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이익이 없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
		<u>익인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u>
		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
		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환헷지 대상 해외자산
		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혜지 거래로부터 이익
		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
		<u>랍니다.</u>

- 끝 -